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가합1136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김재승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면

담당변호사 김문수, 윤다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허윤, 전진우, 김기연

변론 종결2023. 4. 28.

판결 선고2023. 7. 21.

주 문

1.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8. 3. 30.자 758,234,422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8,234,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공사 구조물을 보수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금속 복합물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모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계열사이다.

나. 원고, C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10. 6.경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고 한다)을 토대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산하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39조에 따라 먼저 원고의 계산으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한 공동원가분담금을 원고, C 및 F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을 지급기일로 정해 C와 F에 청구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였고 2015. 8.분부터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6. 29. 원고에게 2015. 8.분 공동원가분담금 중 일부로 215,459,394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원고는 2018. 10. 19. C을 상대로 2015. 8.분부터 2016.

6.분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3518호), 위 법원은 2019. 7. 17. 'C은 원고에게 3,005,886,085원 및 그중 2,442,998,943원에 대한 2018.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8.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0. 21.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 최종적으로 정산된 공사비를 토대로 2016.

6.분(일부)1) 부터 2019. 8.분까지 발생한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3874호), C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20. 4. 10. 'C은 원고에게 8,726,897,746원 및 그중 7,902,564,834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5.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위 제1, 2판결을 통틀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마. 한편 C은 2018. 3. 30.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58,234,422원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고 한다).

1	2018. 3. 30.	C	피고	우리은행(계좌번호 1 생략)	129,324,800
2	111,814,406				
3	517,095,216				
합계	758,234,4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8,276,327,486원(원금 기준)의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이 있는데,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758,234,422원의 이 사건 변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758,234,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C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2019. 8. 6. 제1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었고, C이 2018. 4.경 원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을 반환하겠다고 회신하여 그 기한이 도래한 2018. 5. 1.에야 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2018. 3. 30. 이루어진 이 사건 변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C은 이 사건 변제 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변제는 피고가 C에 자재를 납품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자재대금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C은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원고를 상대로 공동원가분담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다.

3) 피고는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이 사건 변제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조합원)인 C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제39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자신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 확정된 공동원가분담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C이 2015. 7.분까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2015. 8.분부터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에 관하여는 그중 일부인 215,459,394원을 2017. 6. 29.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2015. 8.분(일부)부터 2016. 6.분까지 발생한 C의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만 하더라도 이미 원금을 기준으로 2,442,998,943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말일 발생하여 그 다음 달 말일을 지급기한으로 하는바, C의 공동원가분담금 미지급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변제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피보전채권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 내지 18, 29,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변제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이 원고에게 2015. 8.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 중 일부만 지급한 이래 그 나머지 및 이후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C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을 원고가 지급받아 C의 원고에 대한 공동원가분담금 채무가 만족된 것으로 처리해왔다. 그런데 원고가 2017. 9. 22. C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10차 공사 1회 기성금 중 C의 몫인 990,000,000원을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데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C은 2017. 9. 26. '건설업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예치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 2018. 4. 초에 원고에게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후 2017. 11. 14. 원고의 양해 하에 위 기성금 990,000,000원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가 2017. 12. 14. C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10차 준공기성금 중 C의 몫인 1,356,600,000원을 원고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데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C은 2017. 12. 15. 앞서와 마찬가지로 '건설업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예치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 2018. 4. 초에 원고에게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후 2018. 2. 1. 원고의 양해 하에 위 기성금 1,356,600,000원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C의 계열사인 E과 D은 별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7049호)에서 C이 위와 같이 조치한 이유에 관하여 'C의 전반적인 입찰 성적 부진 등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수지악화로 자금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 부득이 위 기성금을 C의 자금 지출 수요에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C의 각 회신 공문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2017년말 ~ 2018년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인 '법인 자본금 12억 원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관련 판결에서 C은 2015. 8.분부터 2016. 6.분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2,442,998,943원과 그 지연손해금3) 및 2016. 7.분부터 2019. 8.분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7,902,564,834원과 그 지연손해금4)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C이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진 2018. 3. 30.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채무는 원금만을 기준으로도 약 8,200,000,000원5) 을 상회하고 있었다.

③ C의 2017. 12. 31.을 기준으로 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9,548,611,593원, 부채총계 2,072,763,603원으로서 자본총계(순자산액)가 7,475,847,990원(= 9,548,611,593원 - 2,072,763,603원)이었다. 한편 C이 201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채무는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원금만을 기준으로도 합계 7,836,321,191원(= 2015. 8.분부터 2016. 6.분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합계 2,442,998,943원 + 2016. 7.분부터 2017. 12.분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합계 5,393,322,248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십 수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공동원가분담금 채무는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부채총계와 위 공동원가분담금 채무를 모두 고려하면 C이 이 사건 변제 무렵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C에 대한 2015. 8.분부터의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행사한 별건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5747호)에서, 위 법원은 'C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동원가분담금 채무의 탕감을 요구한 사실, C은 2016. 12. 31. 기준으로 자산이 총 8,507,757,000원, 부채가 총 1,497,938,000원, 자본이 총 7,009,81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본(순자산)액이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동원가분담금 채무의 원금액에도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C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2. 11. 10.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여부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1 내지 28, 30 내지 43, 45, 4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C이 수익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변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변제로서 H 공사, I 공사, J 공사에 관하여 C에 자재를 납품한 데 대한 기존 자재대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제출한 발주요청서(을 제3호증), C와 위 각 공사의 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을 제5호증), 입찰에 관련된 서류(을 제6호증)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였는지 및 피고가 C에 실제로 자재를 납품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 위 각 공사를 위해 피고가 납품하였다는 자재의 수량과 단위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서 및 발주자확인서(을 제9, 10호증)의 기재 내용과 세금계산서(을 제4호증), 발주요청서 및 제품출고지시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 상호간 불일치하는 부분(제품별 수량 합계, 재료비 항목의

금액 합계 등)이 존재하는 점, ㉔ H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2016. 11. 30. 발행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8. 3. 30.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고, 발주요청서상 구입처, 수령인, 도착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제품출고지시서상 해당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닌 제3자(주식회사 K)가 발주자 란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면 C이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자재를 발주하고 납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건설공사의 통상적인 수순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㉕ I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2017. 11. 30. 및 2017. 12. 29. 발행되었는데 그로부터 3~4개월이 지난 2018. 3. 30. 이 사건 변제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발주요청서상 구입처, 수령인, 도착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㉖ J 공사의 경우 일부 발주요청서상 구입처, 수령인, 도착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를 하였을 무렵 피고의 C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확실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D, E과 더불어 C의 계열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L은 2007년 말경 기준으로 피고의 주식 40%를 보유하는 한편, 2018. 3. 31. 기준으로 C의 주식 28.6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C의 대표이사 M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밖에도 피고의 주요 주주인 N, O, P은 C의 계열사인 피고, D, E의 주주이거나 위 각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이에 더하여, C의 홈페이지에 피고의 대표이사 L이 C의 회장이고 C이 피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회의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L이 C의 회장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 L은 피고뿐만 아니라 C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C은 건설업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기성금 합계 2,346,600,000원(= 2017. 11. 14. 990,000,000원 + 2018. 2. 1. 1,356,600,0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 2018. 4. 초경이 다가오자 이를 인출하여 2018. 3. 30. 계열사인 피고에게 합계

758,234,422원의 이 사건 변제를 하는 한편, 2018. 4. 2. C의 또다른 계열사인 E의 계좌로 1,155,852,110원(= 594,700,000원 + 561,152,110원)을 송금하였고, 2018. 4. 2. 피고의 대표이사면서 C의 주주인 L 등에게 2017년도 정기배당금 명목으로 539,441,040원을 지급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변제 직후인 2018. 4. 2.경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등의 주주들에게 위 ③항 기재와 같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6) 또한 관련 소송이 진행되던 중, C은 2018. 11.경 공동수급체로서 'Q공사'를 수주받아 수행하다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이유 없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중도 탈퇴하였으며, 2019. 3. 25.부터 2019. 7. 2.까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인 건설 관련 특허를 계열사인 D 및 E에 다수 이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또한 C은 제1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1. E에 콘도회원권(공유지분 12분의 1)을 이전하였다. 이처럼 C은 이 사건 변제 무렵 및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공의원가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무렵 주요 자산의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켰다.

⑤ 제1판결은 'C이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관여하였고, 수주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지분율대로 자금을 출자하고 손익금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며,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씽크홀로 인한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에도 관여하였고, 2015. 8.경 이전까지는 원고가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한 공동원가분담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C이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C의 채무초과상태, 위 ③, ④항에서 살펴본 C의 이 사건 변제를 전후한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변제를 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②항에서 살펴본 C과 피고의 관계, 주요 주주 및 임원의 구성 등에 비추어 피고 역시 C의 위와 같은 재산 상태와 각종 자산의 처분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사해행위인 이 사건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수령액 합계 758,234,4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현재언

판사유정화

- 1) 제2판결에 의하면, 2016. 7.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은 2016. 6.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 중 원고가 제1판결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한다(제2판결의 판결문 제5면 참조).
-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피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경과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D 및 E이 2020. 11. 9. 원고와의 별건 소송(2020가합577049호)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 이 사건 변제에 관한 무통장입금의뢰서)를 2020. 11. 10. 송달받아 C이 그 계열사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갑 제6호증)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인 2021. 11.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
- 3) 2018.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62,887,142원 및 2018. 9. 1.부터 제1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4) 2019.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824,332,912원 및 2019. 10. 1.부터 제2판결 사건의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11.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9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5) 2015. 8. 1.부터 2016. 6. 30.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2,442,998,943원(제1판결의

판결문 제7~9면 참조) + 2016. 7. 1.부터 2018. 2. 28.까지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원금 5,830,607,879원(제2판결의 판결문 별지 표에서 각 해당 부분 참조한 합계액).

6) 원고는 2021. 7. 19. 상법 제462조 제3항에 근거하여 C에 대한 공동원가부담금채권의 채권자로서 위 배당을 받은 L 등 9인을 상대로 C에 배당이익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2269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102975호로 이송), 위 법원은 2023. 1. 26. 'C의 2017.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C의 총자산은 9,548,611,593원, 부채는 2,072,763,603원, 자본금은 2,200,000,000원, 이익준비금은 116,372,400원이고, 여기에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공동원가분담금 채무 약 8,000,000,000원을 부채로 새로이 계상하면 배당가능금액은 약 -2,900,000,000원[= (9,548,611,593원 - 2,072,763,603원 - 약 8,000,000,000원) - (2,200,000,000원 + 116,372,400원)]이 된다. 2017. 12. 31.을 기준으로 C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음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L 등 9인이 항소하여,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3나12308호).